

영등포구의회
제13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08. 9. 23.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전문위원 이남식입니다.

김기중의원 외 4인 의원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2008. 9. 10.
- 제안자 : 김기중의원(외 4인)

■ 제정(제안) 이유

- 문화예술 활동의 육성과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을 통해 구의 문화적 역량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구민이 문화적인 도시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시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영등포구가 추구하는 문화도시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내지 제3조)
- 문화예술의 진흥과 전통과 현대의 조화, 지역적·국제적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5조)**
-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함.
 -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과 문화시설 및 제반 여건의 조성**(안 제7조)**
 -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적·친환경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의 조성**(안 제8조)**
 - 기본적인 문화향유 기회가 보장되는 문화복지의 실현**(안 제9조)**
 -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지원**(안 제10조)**
 - 문화도시 인프라를 활용한 문화관광의 개발**(안 제11조)**
 - 더불어 사는 건전한 지역문화의 정착**(안 제12조)**
 - 문화예술·문화관광 등 문화도시시책의 교류 확대 및 문화네트워크구축 지원**(안 제13조)**
- 구청장이 문화도시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 시 구민과 문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안 제14조 내지 제15조)**
-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문화도시자문단을 구성·운영하며 자문단은 문화도시발전계획의 수립과 문화시책·사업에 대한 자문, 문화도시시책 및 문화관광시책의 연구·개발, 문화도시 관련계획에 대한 평가, 문화관련 시책의 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6조)**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문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17조)

■ 관련법규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제39조
- 「문화산업진흥법」 제3조

■ 타 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 서울특별시, 구로구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의 육성과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을 통하여 우리구의 문화적 역량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구민이 문화적인 도시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시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 추진체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 제2조 내지 제3조** 우리구가 추구하는 문화도시의 기본이념과 정의를 규정하고
- **안 제5조 내지 제6조** 문화예술의 진흥과, 전통과 현대의조화, 지역적·국제적문화 교류의 활성화를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구민은 영등포구의 문화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하였습니다.

- **안 제7조 내지 제13조** 문화도시시책의 기본방향은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과 문화시설 및 제반여건의 조성,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적·친환경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의 조성,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지원, 문화예술·문화관광 등 문화도시시책의 교류확대 및 문화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 제14조 내지 제15조** 구청장이 문화도시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수립시 구민과 문화관련기관·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16조**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자문단(2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문화도시 시책의 기본이념과 시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역할등을 정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문화도시 영등포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구민의 문화향수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언적·상징적의미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 9. 23.

보 고 자 : 이 남 식

참고자료 : 관련법령

관 련 법 령

■ 문화예술진흥법[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9조(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일부개정 2008.3.28 법률 제9071호]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